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323호

「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1일
국토교통부장관

「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」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택지·도시개발 및 대지조성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산정기준인 「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」를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표준개발비 재산정

택지개발사업 등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표준개발비를 1 제곱미터(m²)당 334,100원으로 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

의견서를 2024년 4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(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책자료>법령정보>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현 행	개 정 안	의 견

나. 보내실 곳

- 1) 일반우편: (30121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, BANK빌딩 7층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
- 2) 전자우편: y3ancy@korea.kr
- 3) 팩스: 044-868-8375